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9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조경태·유용원·엄태영

곽규택 • 정성국 • 최수진

이종배 • 정연욱 • 박상웅

나경원 · 김민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 조·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개조하는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규율하여야 할필요가 있으므로, 어선을 실제로 건조·개조하는 자의 경각심을 제고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의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2항). 법률 제 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 2.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는 자에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	②		
·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			
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			
조·개조하는 자가 <u>제1항제2호</u>	<u>다음 각 호의 어느</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하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			
다.			
<u><신 설></u>	1.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u><신 설></u>	2.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		
	나 개조한 경우(어선의 건조		
	·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		
	조하는 자에 한정한다)		